사업방법서 별지

표준화 실손의료비 보장 유예계약 특별약관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보험 / 제도성 특별약관

2. 보험종목의 명칭

표준화 실손의료비 보장 유예계약 특별약관

3. 적용대상계약

가. 2009년 8월 1일부터 9월31일까지 판매된 실손의료비 보장(이하 「갱신전 실손의료비 보장」이라 함)이 부가된 보험계약(이하 「실손의료 보험계약」이라 함) : 각 개별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기재된 "보험업감독규정 부칙(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3호, 2009.7.22)[시행 2009.8.1]에 의한 실손의료비 보장계약 갱신 특별약관" 이 부가된 보험계약에 적용함.

나. '가' 에 정한 「실손의료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을 적용함.

4.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가.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 이 제도성 특별약관 및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따름

나. 보험기간

- 「갱신전 실손의료비 보장」이 부가된 보험계약(실손의료 보험계약)의 사업방법서 별지의 해당 내용을 따름.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 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잔여보험기간 이내에서 갱신함.

5. 기타 사항

『표준화 실손의료비 보장 유예계약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손의료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갱신전 실손의료비 보장」의 해당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름